

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제2차 정례회 보건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

2018. 11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보건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8년 11월 28일
보건·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6일

나. 제출자 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

보건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18. 11. 28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감사담당관)

가. 제안이유

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에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 과정의 주민 배심원단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여 구정 참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참여 근거 마련
- 2) 동별 인구수 대비 상한 인원 증원 추가
- 3)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및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8. 9. 19.~10. 10.) 결과 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김동영)

가. 개정 취지

본 조례안은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 확대 및 동별 인구수 대비 상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구정 참여 기능을 확대하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,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주민 배심원단 참여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고,
- 동별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, 인구수 30,000명 이상인 동의 경우 상한인원의 30%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정함.

※ 주민 3만명 이상 동(염창, 등촌3, 화곡본, 화곡1, 우장산, 발산1, 방화1동)

다. 종합의견

- 주민구정평가단은 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으로,
- 본 개정안은 주민구정평가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활동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,
- 조례의 개정 목적에 부합하고, 지방자치법 등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